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5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1993年 12月 17日(金) 午後2時18分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1.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平昌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4.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平昌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6. 1993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同意案
7.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8. 休會의件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 2 面
2.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2 面
3.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平昌郡守提出) ——— 2 面
4. 平昌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平昌郡守提出) ——— 5 面
5.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 5 面
6. 平昌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5 面
7 1993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同意案 (平昌郡守提出) ——— 8 面
8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平昌郡守提出)——— 8 面
9. 休會의件 (議長提議)——— 10 面

(14시18분 개의)

○ [redacted]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후 이후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부터 장기간에 걸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등 정기회의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창군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관련 안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

1. 報告事項

(14시19분)

○ [redacted] 먼저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redacted] 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 [redacted]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3.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平昌郡守提出)

(14시22분)

○ [redacted]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김낙운 의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99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12월 6일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993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교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세출의 예정표이며 1년간의 재정계획이므로 세입세출추계에 정확을 요하는 주요한 사안으로 증감요인이 발생되면 경정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견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세입예산에 예산편성치 않고 징수결정한 세입수입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고 세입예측이 불투명한 송정택지개발 분양금의 가공세입을 세입추계 하였으며 과년도 세입예산을 결손처분없이 이월하면서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비하여 지출비율이 낮은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재투자 하지 않으므로 불용액이 과다발생 건전재정 견지와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치 못하였으며 매년 수건의 이월사업의 반복발생은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 전용되어야 하며 추경시 조정으로 최소화 시켜야 하고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자치 않고 예산을 사정하는 결과이며 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및 미수납액 과다발생과 세입예산편성된 예산을 수납처분치 않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특별회계에 설치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으므로 징수대책및 예산운영방안 강구가 요구 된다는 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소수의 의견, 기타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3년 12월 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993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상정,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교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동절기 제설장비구입 및 제설작업비로 2,064만원, 도열병공동방제농약대 570만3천원, 우박피해농가 비료지원 225만2천원의 집행은 예비비 집행사유가 타당함이 인정되나 배상금 236만1천원과 퇴직수당 부족분 3,522만3천원을 수회에 걸쳐 사용한것은 기관운영의 기본적 경비이므로 해당과목에 계상함이 타당하며 매년 반복되는 도민체전 출전경비, 도내일주 역전마라톤 경비 및 환영행사에 7,570만2천원을 집행한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해당예산 과목에 계상함이 타당하고 동일사안을 3회에 걸쳐 집행하는등의 사례는 금후 지양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dacted] 김낙운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4. 平昌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 廢止條例案(平昌郡守提出)
5.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6. 平昌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 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4시30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高昶植 기획실장 입니다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사유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행정수행사업 국고및 지방비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함에 따라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2년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해온 평창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며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동특별회계 잉여금은 19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로 이입하게 됩니다.

조례의 폐지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와 도로부터 온 지침과 강원도 예산에 관한 공문에 근거를 두고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 평창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고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행정수행사업, 국고및 지방비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통폐합조치함에 따라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제34조에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폐지하며 제34조의 폐지에 따라 동조례 제35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조항을 삭제하며 제3조의 폐지에 따라 동조례 36조의 특별회계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공유임야특별관리회계에 잉여금을 일반회계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함을 개정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강원도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조치함에 따라서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개정으로 이입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명칭은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고 조례의 폐지는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며 회계전환은 동 폐지조례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으로 개정이 이입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강원도 공문에 의해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3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 의원 발언 하십시요.

○ [redacted] 김낙운 의원 입니다.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부기간, 그리고 융자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redacted]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는 크게 나누어서 2 장에 금고운영이 있고 하나는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운영에서 융자의 한도액은 제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억, 가구당200만원 이내로 하여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를 조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율에 대해서는 "년 3%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의 한도액이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로 되어있고, 융자이율은 무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라는 규정은 12조에 융자의 한도 및 이율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2호에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 [redacted]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1993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同意案(平昌郡守提出)

(14시40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기 승인받은 93년도 공유재산당초관리계획및 제1차 변경계획안 이후 발생된 관련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어 '93 관리계획을 집행키 위함이며, 변경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입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토지 12건 35,450㎡, 교환취득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5건 24,722㎡, 교환처분으로 한일산업 목초지 대부지 9건 24,466㎡, 매각으로 방림삼거리 31번 국도확장용지 2건 147㎡, 건물신축으로 평창상수도관리건물 4동 175㎡와 농기계공작실 1동 16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제안설명을 하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

案(平昌郡守提出)

(14시44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관리계획에 2번 기본방향은 19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한함이며, 적극적인 관리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처분보다는 보존확대위주로 관리하고 매각을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며 가급적이면 군이 필요한 재산과 교환처분하는것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18건에 32,152㎡로 농촌지도소에 현대화 시설용지용 부지및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5건에 7,025㎡, 군청진입로부지 1건에 291㎡, 공설묘지조성부지 1건에 3,570㎡, 계촌시가지정비 편입부지 2건에 845㎡, 용평노인회관부지 3건에 564㎡, 진부보건지소 진입로부지 1건에 269㎡, 횡계시가지 편입부지 1건에 30㎡이며, 교환은 군유림집단화 사업으로 2건에 8,628㎡와 수해주택 이전부지 1건에 10,522㎡ 이며 신축은 영농종합상황실 1동에 408㎡ 입니다.

처분은 총21건에 21,405㎡로 매각은 사유건물 점유토지 13건에 1,681㎡와 교환은 군유림집단화 1건에 8,132㎡, 수해주택이전부지 4건 10,522㎡ 이며 철거는 용도폐지된 평창.봉평 문화관 2동 954㎡와 봉평도읍가꾸기 사업에 저촉된 봉평보건지소건물 1동 116㎡ 입니다.

대부관리재산은 606건 78만5,183㎡ 로 이 재산은 모두 92년 1월 1일부터 3년간을 대부기한으로 설정하여 계약체결 하였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이 종료되는바 사유건물 점유토지와 자경농지가 대부분이므로 기간종료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95년도 1월중 재계약 체결을 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94 관리계획에는 그 세부목록 제출은 생략

하고 다만 무상대부및 사용허가 재산만 그 사유를 명시한 대부재산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9. 休會의件 (議長提議)

(14시49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합의된대로 지역단위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0분 산회)

○ 出席議員

議長	韓榮一
副議長	金鍾永
議員	李致玉
議員	李相薰
議員	朴容泰
議員	朱泰元
議員	金樂雲
議員	郭文春

○ 出席公務員

企劃室長	高昶植
文化公報室長	李喆均
財務課長	李永德
環境保護課長	金學根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産業課長	金時漢
地域經濟課長	朴榮源
民防衛課長	朴俊河
保健事業課長	任永彬
技術補給課長	李宇炯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權赫昇
議事係長	咸京鎬

〔 議 席 〕

○ 議席表 (5 面에 실음)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依據 署名 捺印함.

1993年 12月 18日

議長 韓榮 (韓榮)

議員 李致 (李致)

議員 郭文 (郭文)

事務課長 權赫昇 (權赫昇)

[報 告 事 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 선출

- 위원장 김낙운

- 간 사 곽문춘

○ 의안접수및 회부

1.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1993년12월4일 평창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1993년12월4일 평창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3. 199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1993년12월4일평 창군수제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4.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안(1993년 12월14일 평창군수제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회부)

5.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승인안심사보고(1993년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1992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1993년도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1993년도평창군에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993년도12월17일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1993년12월10일 평창군수제출)

9. 199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 2차변경동의안(1993년12월10일 평창 군수제출)

10. 199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 의안(1993년12월10일평창군수제출)